

## 경운대학교 KW-TQM 운영위원회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대학지정강좌 교과목(AL, IAC/IFC, APC, BL 등)의 질 관리를 위한 교수활동 질 관리(Teaching Quality Management, TQM) (이하 “KW-TQM”라 한다)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본 운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교육품질관리 체계 설계
2. 교육과정 내 실증 데이터 수집 및 분석
3.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 수립
4. 대학지정강좌 영역 별 대표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
5. 위 각 호에 수반되는 사항

#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**제3조(구성)** 운영위원회는 7명 내외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임명한다.

1.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하고, 내부위원은 성과 및 평가혁신 부장, 교과혁신 부장, 비교과혁신 부장, 각 학과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외부위원은 교육분야 전문가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
2.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3. 필요시 전문컨설팅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6조(회의록 작성)**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심의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운영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)** ① 위원장은 매 학기 개시 전에 학기별 운영계획서를 교육혁신본부 본부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지정교과목의 매 학기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본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보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**제9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<2020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